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0 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하주차장 내부 불연재료 사용을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여, 대형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건축공사의 지하주차장에 마감재료 및 단열재 등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민간 건축물 공사 및 시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불연재료 사용 권고 기준과 우선 적용 대상을 명시함 (안 제5조)
마. 불연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홍보, 사례 수집 및 정책 연구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민·관 유관기관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7조)
사.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주차장 내부의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주차장 화재 시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주차장”이란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2.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감재료 등의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세종특별자치시 발주공사의 불연재료 사용) ① 시장은 시가 발주

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건축공사 중 지하주차장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서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지하주차장 내부의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1.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

2. 천장 및 벽체에 설치하는 단열재

3. 그 밖에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불연재료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감재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연재료 사용기준을 해당 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및 발주서류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불연재료 사용 권고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내부에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민간 건축물의 건축공사

2. 기존 지하주차장의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 교체 공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연재료 사용을 권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재료를 우선적으로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지하주차장 천장 및 벽체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2.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배관설비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단열재를 포함한다)

3.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주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건축공사에서 지하주차장의 불연재료 사용 기준을 설계서, 시방서 및 발주서류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불연재료 사용 촉진 사업) 시장은 불연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연재료의 종류와 성능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3. 지하주차장 마감재료 및 단열재 등이 화재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조사 및 정책 연구
4. 불연재료 사용 우수사례의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지하주차장의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하주차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불연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 유관기관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연재료 사용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설계용역을 발주하거나 자체 설계에 착수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도의 설계를 하지 않는 공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사를 발주하거나 직접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1]

#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1.>

⑥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배관설비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단열재를 포함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1.>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시행일: 2028. 8. 12.] 제52조제5항, 제52조제6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 ~ 9. (생 략)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 19. (생 략)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2019. 8. 6., 2022. 2. 10.>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건축공사 중 지하주차장 신축 및 대수선 공사 시 불연재료 의무 사용에 따른 건축비(자재비) 증가분(안 제4조)

○ 건축관계자 대상 교육·홍보, 화재 확산 사례 수집 및 정책 연구,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안 제6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동 호